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6.05(금)

지부교섭 속보

04호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4차 지부교섭_질의응답]

공직취임, 원활한 노사관계의 기반



노동자 약점 이용한 해고 중단해야

4일(목) 15시 보쉬에서 4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등 위협에 물리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임신사실을 숨기고 일하던 학교 강사가 유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경비, 청소년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내쫓기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해고를 강요하는 행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 공직 취임, 회의시간 보장 질의응답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격리 치료가 필요한 1급 감염병이 지정돼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유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지부는 이런 경우도 모두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유증상자, 확진자 등의 격리기간, 검사, 치료,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증상을 숨기고 일하다 감염병을 더 확산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지부는 올해 핵심적인 요구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임원, 간부로 임명될 경우 공직취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가 안정화되면 지역 노사문제도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다.

차기 교섭은 6/11(목) 15시 대한이연

4차 교섭까지 모든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쳤다.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다음주 5차 교섭에서는 제시안이 나올 것이다. 차기 교섭에서 사측의 교섭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교섭 속기록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기간 정상근무 인정해야

사 : 국내외 경영이 어렵다는 건 굳이 말 안해도 다 알 것 같다. 다행인건 보쉬 글로벌 가동율이 30%였는데 60%까지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오늘 추가 질의응답할텐데 조합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조합을 이해할 수 있고, 조합도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노 : 뉴스를 보니 학교 강사로 계신 분이 임신을 숨기고 일하다가 유산됐다고 한다.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일거다. 많은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경비, 청소노동자를 내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학교강사가 왜 임신을 숨기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근무를 하게 한다. 고용을 압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걸로 피해는 더 심각해진다.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해고를 강요하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 : 공직취임에서 말하는 임원, 간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선출직에 대해서 한정하는건지? 근무한 걸로 간주한다는건 전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하는 건지 추가적인 요구인가?

노 : 임원은 선출직, 간부는 지부장이 임명한 간부를 말한다. 타임오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요구이다.

사 : 감염병 정의가 어느 범위까지인가?

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급, 2급 감염병이 나뉘지는데 1급 감염병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

사 :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기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라는데 정의하는 기준이 뭔가?

노 : 격리, 검사, 회복기간을 갖는 건 사용자에게도

좋은 방안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 노력에 드는 모든 기간을 정상근무로 하지는 거다. 생계 문제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 감추는 경우가 있다. 드러나게 하려면 정상근무로 인정하는게 좋고, 확산 방지에 도움된다.

사 :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격리 조치 않고,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하나?

노 : 고의적으로 걸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 그 질문에 답변할 이유를 못느끼겠다.

사 : 지부와 지회 간부 시간할애는 분기별 8시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착되기도 전에 또 16시간으로 늘리는 건 어떤 뜻인지? 8시간 합의사항으로는 부족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

노 : 작년엔 확대간부 교육시간이고, 이건 회의를 말한다. 한은 사업장에 단협의 조합원 범위 외의 지부 개별조합원이 있다. 이들 중에 지부 대의원으로 선출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한 것이다. 기존 합의로는 간부 활동을 다 하기 어렵다. 지부 부서별 회의도 월 1회 하는데 요청하지 않은 적도 많다. 하다보니 부족해서 추가 요구했다.

사 : 공직취임 대상을 임명직 간부까지 하면, 지회장이나 지부장 의지에 따라 조직이 얼마든지 비대해질 수 있다. 과한 것 아닌가?

노 : 우리 요구는 보는 그대로다.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셔라. 지부가 안정되면 지역의 노사문제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교섭에서 사용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발언 내용을 다시 밝히겠다.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금지에서 애초에 계획된 신규채용은 노조파괴나 쟁의 무력화 목적이 아니라고 지회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 판단의 주체는 지부가 된다. 오해 없으면 좋겠다.